

# 瑞山市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 1.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 1999. 6. 19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1999. 6. 21

라. 上程日字 : 1999. 6. 25, 7. 1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稅務課長 安 光 來)

### 가. 提案理由

○ 지난 '98. 12.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 소액부징수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징세비용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나. 主要骨子

○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 동지역은 1,800원에서 → 4,000원으로
-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 3,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함.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동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인균등할 주민세 표준세율이 제한세율로 바뀌면서
  -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소액부징수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맞는 주민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 표준세율은 동지역 1,800원, 읍·면지역 1,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징세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고,
  - 소액부징수액이 2,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주민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그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 도의 권고안대로 종전과 같이 읍·면·동 지역을 분리, 소폭인상 조정한 후 점증적으로 주민세율을 인상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조정하는 것임.

###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질의 : 인상세율 비율이 동지역은 122%, 읍·면지역은 200%로써 일시에 높은 폭으로 인상하게 된 사유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액이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담세자의 조세 저항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 인상율로 보면 다소 높은 쪽으로 인상 되었지만 주민세는 영세민에게는 부과하지 않으며, 세법개정으로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 2,000원 미만의 세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전국적인 평균은 읍·면지역이 3,300원, 동지역은 4,500원인데 비하여 충남지역은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시·군별 기준을 마련하였고, 세법에 상한이 10,000원인데 인상세율은 30~40%의 대체로 낮은 수준이나 다소는 담세지의 조세저항이 예상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 실정의 홍보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계획임.

## 5. 討 論 및 少 數 意 見 : 생 략

## 6. 審 査 結 果 : 수정안대로 의결

※ 수정안 「붙임」

# 瑞山市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修正案

瑞山市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중 동지역 “4,000원”을 “3,000원”으로, 읍·면지역 “3,0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기 정 안	수 정 안																		
<p>제20조(세율)①균등할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개인</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50%;">구 분</th> <th style="width: 50%;">세 액</th> </tr> </thead> <tbody> <tr> <td>동지역(통합이전의 시지역)</td> <td style="text-align: right;">1,800원</td> </tr> <tr> <td>읍·면지역(통합이전의 군지역)</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원</td> </tr> </tbody> </table> <p>나. (생 략)</p> <p>2. (생 략)</p> <p>② (생 략)</p>	구 분	세 액	동지역(통합이전의 시지역)	1,800원	읍·면지역(통합이전의 군지역)	1,000원	<p>제20조(세율)① .....</p> <p>.....</p> <p>1.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시의 관할 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50%;">구 분</th> <th style="width: 50%;">세 액</th> </tr> </thead> <tbody> <tr> <td>동 지역</td> <td style="text-align: right;">4,000원</td> </tr> <tr> <td>읍·면 지역</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원</td> </tr> </tbody> </table> <p>나.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구 분	세 액	동 지역	4,000원	읍·면 지역	3,000원	<p>제20조(세율)① .....</p> <p>.....</p> <p>1.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50%;">구 분</th> <th style="width: 50%;">세 액</th> </tr> </thead> <tbody> <tr> <td>동 지역</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원</td> </tr> <tr> <td>읍·면 지역</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원</td> </tr> </tbody> </table> <p>나.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구 분	세 액	동 지역	3,000원	읍·면 지역	2,000원
구 분	세 액																			
동지역(통합이전의 시지역)	1,800원																			
읍·면지역(통합이전의 군지역)	1,000원																			
구 분	세 액																			
동 지역	4,000원																			
읍·면 지역	3,000원																			
구 분	세 액																			
동 지역	3,000원																			
읍·면 지역	2,000원																			

의안번호	제 7/ 호
의결년월일	1999. 6. . (제 회)

#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6. 19

# 서산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1
----------	----

제출년월일 : 1999. 6. 19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1. 개정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1998.12.31 법률 제5615호)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소액 부정수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징세비용 등을 고려하여 서산시시세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동지역은 “1,800원”에서 “4,000원”으로 읍·면지역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함(안 제20조제1항).

## 3. 참 고

### 가.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및 제176조(세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참고자료

- 지방세법 개정 내용(1998.12.31 법률 제5615호)

# 서산시시세조례개정안

서산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구 분	세 액
동 지역	4,000원
읍·면지역	3,000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세율) ①균등할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개인</p> <p>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70%;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세 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동지역(통합이전의 시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읍·면지역(통합이전의 군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 </tr> </tbody> </table> <p>나. (생략)</p> <p>2. (생략)</p> <p>② (생략)</p>	구 분	세 액	동지역(통합이전의 시지역)	1,800원	읍·면지역(통합이전의 군지역)	1,000원	<p>제20조(세율) ① -----</p> <p>-----</p> <p>1. -----</p> <p>가. 시의 관할 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70%;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세 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동 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읍·면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원</td> </tr> </tbody> </table> <p>나.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구 분	세 액	동 지역	4,000원	읍·면지역	3,000원
구 분	세 액												
동지역(통합이전의 시지역)	1,800원												
읍·면지역(통합이전의 군지역)	1,000원												
구 분	세 액												
동 지역	4,000원												
읍·면지역	3,000원												